

Beyond Korea No.1⁺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대표 시험인증기관

국립전파연구원(RRA)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KC 적합성평가(MSIP) 제도 소개서

2024. 07. 24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전자파 기술센터

목 차

(서 문)	2
I. 「적합(무선)인증」 업무 절차	3
II. 「적합등록」 업무 절차	8
III. 「자기적합확인」 업무 절차	11
IV. 「잠정인증」 업무 절차	13
V. 「외부성적서」를 이용한 절차	14
1. FTA MRA 성적서 제출	14
2. CB 성적서 제출	16
3. 지정시험기관외에서 발급한 성적서 제출	18
VI.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절차	20
VII. 사전통관제도	23
VIII. 전자파강도(EMF) 승인절차	24
IX. 통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25

서 문

2012년 7월 1일부로 국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인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시험」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 이관되어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도에 의한 「전기안전시험」을, 「국립전파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안전시험」에서는 「정격입력」이 「AC 30 V 초과 또는, DC 42 V 초과(일부품목 제외)」인 기기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서는 「정격입력」과 무관하게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한 「9 kHz 이상의 펄스신호를 갖는 부품을 내장한 기기」 전체를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에서는 「유/무선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을, 그 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적합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CB-scheme 및 FTA-MRA」 제도에 따른 「해외 성적서」인정을 제외하고는 「국립전파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산하)」으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 수행한 성적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서 「전기안전시험」 및 「안전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전자파적합성 시험」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하여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부처의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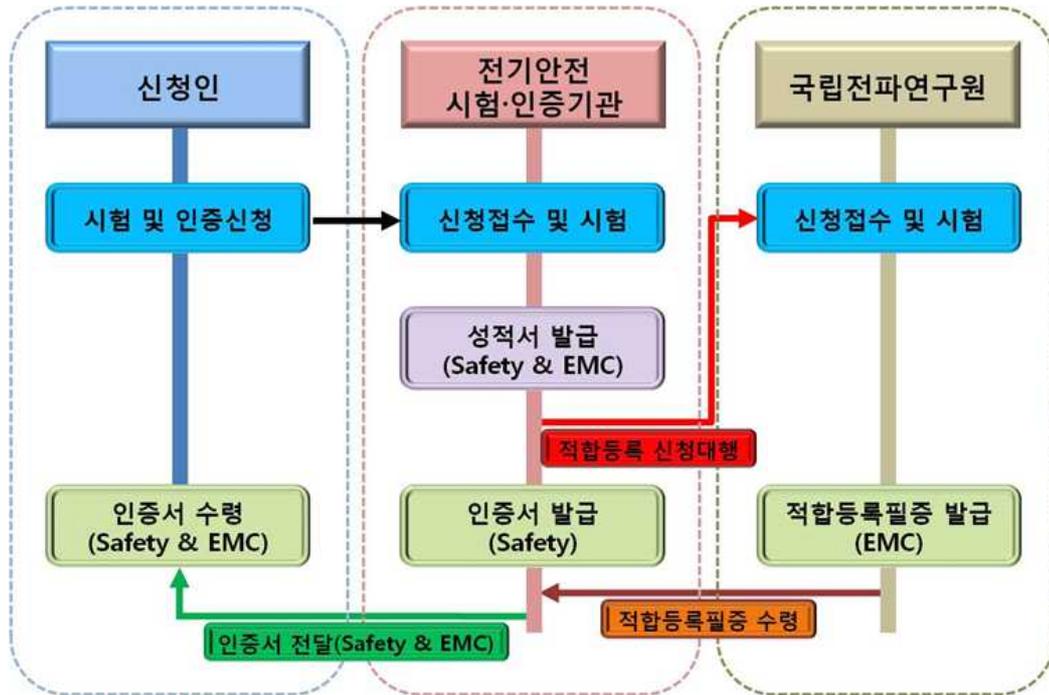
「적합(무선) 인증」 업무 절차

*2019년 7월 이후 일부 항목에 대해 적합등록으로 기준완화

□ 시험 대상 및 신청 절차

- 유/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기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
 - 무선기기 : WCDMA, LTE, Wi-Fi, Bluetooth, RFID, Zigbee 등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기기(송신기능이 없는 수신기는 비대상)
 - 유선기기 : 전화기, 모뎀, 신용카드조회기, IP폰, 유무선 공유기 (VoIP), 모뎀 기기류, 인터넷 TV 셋탑 장치 등
- 적용시험항목 (전파법 제37조, 45조, 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의 세부기술기준)
 - ① 무선(RF)/유선 성능시험 : KTL은 무선시험만 가능(유선시험 불가)
 - 무선 성능 시험의 경우 완제품 혹은 무선 모듈 상태에서 시험 가능(모듈 상태에서 무선-EMC 시험 적용할 경우 별도의 Jig를 제작하여 시험 진행, 정전기시험 등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 방지 목적)
 - ② 무선-전자파(EMC)시험 : 모듈에 대한 무선-EMC 시험을 비적용한 경우 완제품에서 무선-EMC 시험 필요
 - ③ 전자파흡수율(SAR) : KTL은 SAR 시험 불가 - 공중선 전력이 20 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에만 적용. 예, 테블릿 PC, 노트북, 무전기, 손목착용형 무선기기 등

○ KTL을 통한 적합(무선)인증 진행 절차



□ 제출 서류 및 시료 준비

○ 제출 서류 목록

1. 적합성평가 신청서(Application Form)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회로도(Schematic Circuit Diagram)
4. 부품배치도(Part Layout)
5. 안테나 사양서(Antenna Specification)
6. 한글 사용자설명서(Korean User Manual)
7. 대리인 위임서
8. 시료 3ea(무선 성능, 무선 전자파, SAR(대상인 경우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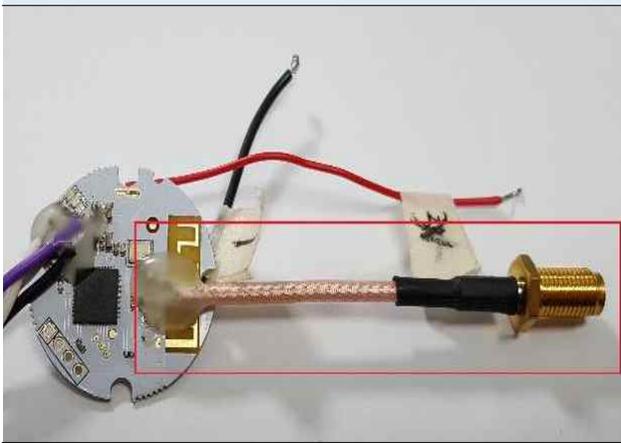
* 적합등록으로 진행시에는 3, 4항은 미제출(신청인 보관 必)

* 시험기기의 성능 및 Test mode 확인을 위해 별지첨부 8. 작성 후 제출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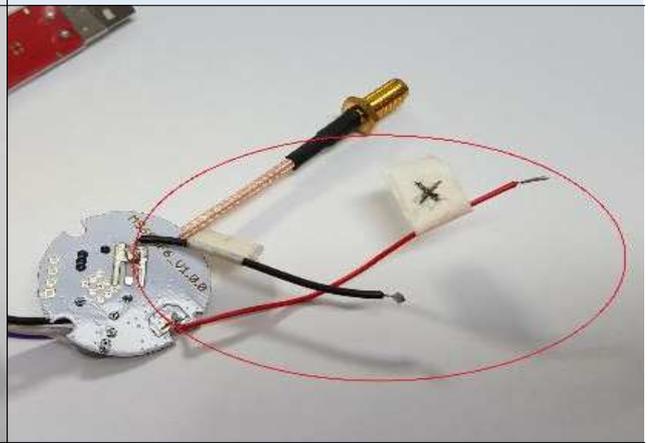
< RF-성능 시험용 시료 준비사항 >

- ① RF Conducted Emission Condition : 송신기 출력단에서 안테나 제거 후 RF Cable 연결(SMA type RF Cable)(그림1.)
- ② 전압가변입력단자(Power Input Terminal for Voltage Extreme test) : 정격전원에 대해서 $\pm 10\%$ 의 전압 가변 입력조건에서 RF 시험(그림2.)
- ③ Test Mode 설정 방법 : 사용주파수의 범위에서 최저, 중간, 최고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 변조 및 무변조 설정(신호 연속 송신)이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할 경우 지그보드 사용可 (그림3.))
 - 수신모드가 있는 경우 송신하지 않고 수신만 하는 모드로 설정이 가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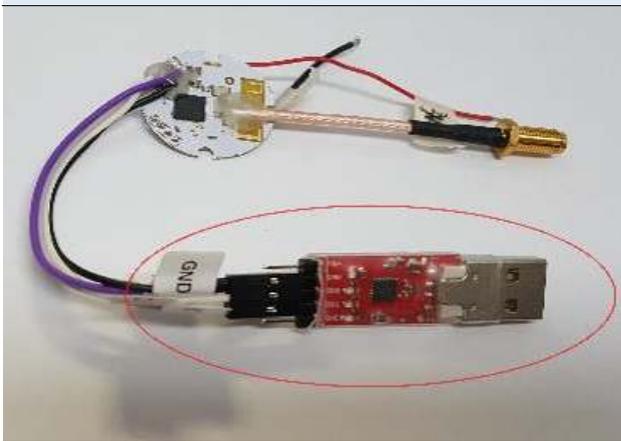
<그림 1> RF Conducted Emission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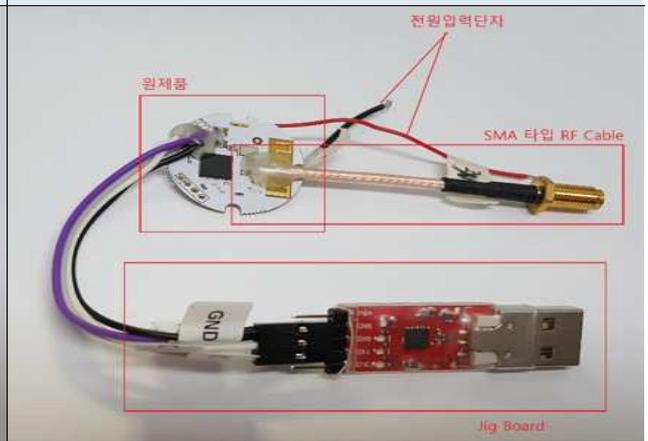
<그림 2> 전압가변입력단자



<그림 3> Test Mode를 위한 지그보드 사용



<그림 4> RF 샘플 예시



○ WiFi device

- ① 802.11 a/b/g/n/ac 각 모드별 시험셋팅되어야 하며 setup guidance 제공필요
- ② 각 모드에서 data rate 설정되어야함
[ex) 802.11b : 1, 2, 5.5, 11 Mbps Data rate setup]

○ Bluetooth device

- ① ※Bluetooth chipset에서는 Bluetooth Test Mode (DUT mode)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luetooth 기기가 DUT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아래의 Bluetooth 시험장비(그림5.)를 통하여 제어하며 시험을 합니다. 이에 해당 Test Mode 진입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KTL에서는 Anritsu MT8852B(그림5.) 장비를 사용합니다. DUT 모드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대상기기 자체 또는 PC를 통하여 Bluetooth chipset 를 제어할 수 있는 tool 과 메뉴얼, 지그 등을 제공해주셔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 시험 수수료 및 담당자

○ 시험 수수료

- 무선기기 : KTL Homepage 참조

(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204010000.do?&schM=list&page=1&viewCount=10&id=&schBdcode=_board602&schGroupCode=)

○ 인증 수수료

- 적합인증 : 200,000(원)
- 적합등록 : 100,000(원)

○ 시험/상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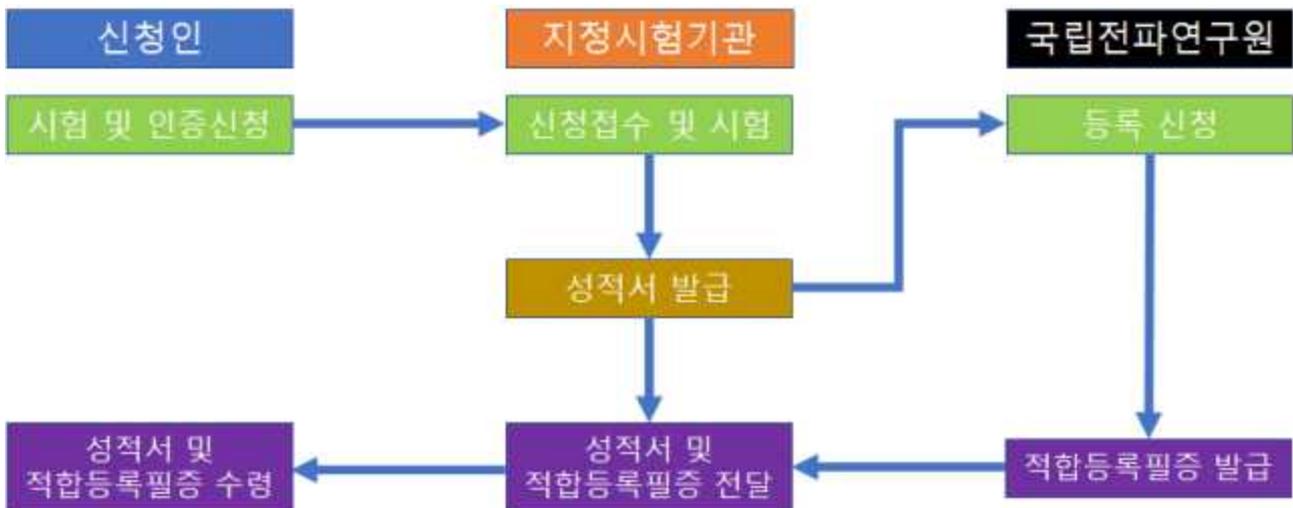
시험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무선(RF) 성능	전자파기술센터	김영현(02-860-1417, yh21c90@ktl.re.kr) 이재성(02-860-1431, ljs90@ktl.re.kr)
무선(RF) 전자파	전자파기술센터	김양현(02-860-1452, kyh0510@ktl.re.kr)

II

「적합등록」 업무 절차

□ 시험 대상 및 신청 절차

- 일부 유·무선기기(Wi-Fi, Bluetooth, RFID, Zigbee 등), 일반 가전 기기, 멀티미디어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
- 국립전파연구원(RRA)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진행 가능
(지정시험소 현황 : RRA 홈페이지 참고, <http://rra.go.kr>)
- 시험 적용 기준
 -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명시
- 적합등록 진행절차



□ 제품 변경 신청 시 시험 적용 여부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

시험 적용 여부	변경 세부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시험 필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로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 및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기기는 제외) 3.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시험 불필요 (단순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파생모델명 추가 2. 제조자, 제조국가 변경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상호, 성명, 주소 변경을 변경 4.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5.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6.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7.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예, AC/DC Adapter 출력 정격 축소, LED Converter 출력 정격 축소 등) 8.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일부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9. 컴퓨터 내장구성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10.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11.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 제출 서류 및 샘플 갯수

○ 제출 서류 목록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4. 대리인 위임서
5. 제품 내부 부품 동작주파수 서식
6.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비교표(파생모델 있는 경우에 한함)
7. 시료 1 대

□ 시험 수수료 및 담당자

○ 시험 수수료

- 전자파시험(방송통신기기) : KTL Homepage 참조

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204010000.do?&schM=list&page=1&viewCount=10&id=&schBdcode=_board602&schGroupCode=)

○ 인증 수수료 : 100,000(원)

○ 시험/접수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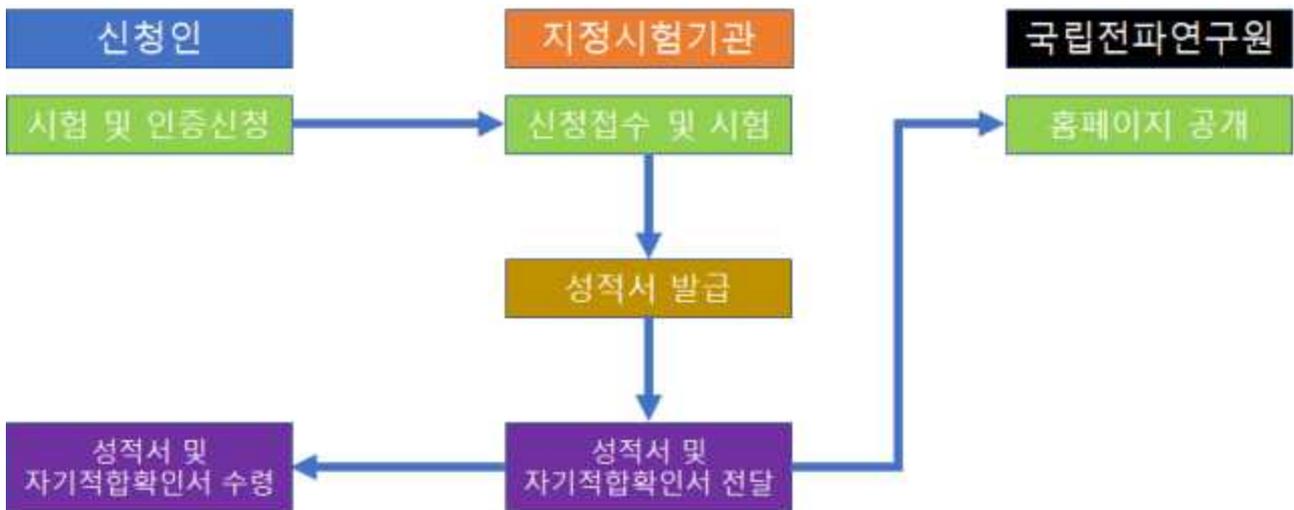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전자파 시험	전자파기술센터	김양현(02-860-1452, kyh0510@ktl.re.kr)
		김혁(02-860-1453, ronin@ktl.re.kr)
접수 담당	고객지원센터	02-860-1247/1297/1281

Ⅲ

「자기적합확인」 업무 절차

□ 시험 대상 및 신청 절차

- 측정/검사 기기류, 산업 환경 사용 기기류,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기류, 조명기기류,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참조)
- 국립전파연구원(RRA) 지정시험소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시험소에서 시험 진행 가능
- 시험 적용 기준
 -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명시
- 자기적합확인 진행절차



□ 제품 변경 신청 시 시험 적용 여부

- 「적합등록」 업무 절차와 동일

□ 제출 서류 및 샘플 갯수

○ 제출 서류 목록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4. 대리인 위임서
5. 제품 내부 부품 동작주파수 서식
6.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비교표(파생모델 있는 경우에 한함)
7. 시료 1 대

□ 시험 수수료 및 담당자

○ 시험 수수료

- 전자파시험(방송통신기기) : KTL Homepage 참조

(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204010000.do?&schM=list&page=1&viewCount=10&id=&schBdcode=_board602&schGroupCode=)

○ 인증 수수료 : 100,000(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발급이 아닌 자기적합확인서 작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으로 발급 가능

: 인증 수수료 100,000원

○ 시험/상담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전자파 시험	전자파기술센터	김양현(02-860-1452, kyh0510@ktl.re.kr) 김혁(02-860-1453, ronin@ktl.re.kr)
접수 담당	고객지원센터	02-860-1247/1297/1281

□ 대상 품목 및 진행 절차

○ 대상 품목

- 신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기기로 현재 규정에서 적용할 기준이 없는 기자재로 자체 검증 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진행 절차(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4장 잠정인증)

- 국제/국내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방식이 언급된 기술사양서 제출
- 자체 시험결과 성적서 제출
- 잠정인증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잠정인증서」 발행

○ 제출 서류 목록

1.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
3. 국제/국내 해당규격 또는 기술개요서
4. 자체 시험성적서
5. 사용자설명서
6. 외관사진 및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내부사진
7. 대리인 위임서

IV

「외부 성적서」를 이용한 업무 절차

1

「FTA-MRA 성적서」 제출

□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

○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제10조1항3호」 참고
-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따라 「유럽」 과 「북미지역」 내에 위치한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이용하여 별도의 시험 없이 등록하는 제도
- 시험성적서 적용규격이 “KS C” 으로 발행된 성적서만 인정

< 해외 지정된 시험소 현황 >

- ◆ 「유럽」내 지정된 시험소(296 기관) :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 ◆ 「북미지역」지정된 시험소(329 기관) :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 제출 서류 목록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3. 해당 지역내 위치한 시험소에서 발행한 EMC 시험성적서
4. 회로도 또는 내부사진
5. 외관도
6.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7. 대리인 위임서

○ 진행 절차

1. 제출된 「EMC 시험성적서」 를 검토
2. 성적서에 이상이 없을시
 -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적합등록」 절차와 동일
 -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 절차와 동일

○ 검토 및 등록 수수료

- 「적합등록」 : 800,000(원)
- 「자기적합확인」 : 600,000(원)

○ 검토/상담 담당자

시험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성적서 검토 상담	EMC 평가센터	김양현(02-860-1452, kyh0510@ktl.re.kr) 김 혁(02-860-1453, ronin@ktl.re.kr)
접수 담당	고객지원센터	02-860-1247/1297/1281

□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기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제10조1항3호」 참고
- IEECEE CB Scheme에 따라 발행된 EMC 성적서를 이용하여 별도의 시험 없이 등록하는 제도
- 예외 : 정보기기류(컴퓨터 및 주변기기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

○ 제출 서류 목록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회로도 또는 내부사진
4.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5. 대리인 위임서
6. CB EMC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진행 절차

1. 제출된 「CB EMC 시험성적서」 를 검토
2. 성적서에 이상이 없을시
 -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제출된 「CB EMC 시험성적서」 를 검토 후 국내 「적합등록 성적서 양식」 으로 변환, 이후 절차는 「적합등록」 절차와 동일
 -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 절차와 동일

○ 검토 및 등록 수수료

- 「적합등록」 : 800,000(원)
- 「자기적합확인」 : 600,000(원)

○ 검토/상담 담당자

시험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성적서 검토 상담	EMC 평가센터	김양현(02-860-1452, kyh0510@ktl.re.kr) 김 혁(02-860-1453, ronin@ktl.re.kr)
접수 담당	고객지원센터	02-860-1247/1297/1281

3

「지정시험기관외에서 발급한 성적서」 제출

□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

○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제10조1항3호」 참고
- 시험성적서 적용규격은 기본적으로 “KS” 이며, “EN” 또는 기타 해외규격으로 발행한 성적서도 인정됨. 단, 국내 사후관리 진행시 “KS”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 만족하여야 함

< 해외 지정된 시험소 현황 >

- ◆ 「유럽」내 지정된 시험소(296 기관) :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 ◆ 「북미지역」지정된 시험소(329 기관) :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 제출 서류 목록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
2. 회로도 또는 내부사진
3. 사용자설명서(국문 또는 영문)
4. 대리인 위임서
5. 외부에서 발행한 EMC 시험성적서

○ 진행 절차

1. 제출된 「EMC 시험성적서」 를 검토
2. 성적서에 이상이 없을시 「자기적합확인」 절차와 동일

○ 검토 및 등록 수수료

- 「자기적합확인」 : 600,000(원)

○ 검토/상담 담당자

시험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성적서 검토 상담	EMC 평가센터	김양현(02-860-1452, kyh0510@ktl.re.kr) 김 혁(02-860-1453, ronin@ktl.re.kr)
접수 담당	고객지원센터	02-860-1247/1297/1281

□ 면제 대상 조건 및 신청 절차

○ 면제 대상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2. 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카목 관련)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 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면제 신청 절차

1. 관세청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
 -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 제품 사전 통관 절차

○ 제품 사전 통관 절차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의한고시」에 의거 수입 기자재에 대해 사전 통관이 필요한 경우 적용
- KTL에 “적합성평가 신청서” 및 제품 시험 수수료를 납부하여 접수하는 경우 “사전통관번호”를 부여
- 부여 받은 “사전통관번호”를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입력 후 사전통관
- 사전통관된 기자재를 시험기관에 제출

○ 적합성평가 최종 완료 후 표시사항 제작 및 부착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의한고시」에 의거 적합성평가를 득한 모든 기기는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함
- 표시기준 제작 및 부착 방법 : 고시 [별표 5] 참고
- 적합성평가 표시는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함
- 제품이 소형이거나 제품 디자인 문제로 제품과 포장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사용자설명서에 표시 가능

□ 적용 배경

○ 법적 근거

- 관련고시 :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에 의거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전열기구 및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전기액체가열기기의 전자파강도는 2019.1.1.일부부터 적용하고,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의 적용은 2017.7.1.일부로 적용됨.

○ 적합등록 승인 방법

- 주방용전열기구, 전기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류 등 전자파강도 대상품목의 경우, 일반 EMC 시험과 전자파강도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적합등록 취득이 가능함.
- 일반 EMC 시험과 전자파강도 시험 대상품인 경우, 두가지 시험을 동시에 한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 등록시에는 일반 EMC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전자파강도 시험성적서」를 취합하여 최종 적합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타기관에서 일반 EMC 시험을 수행한 경우, 당 기관에서는 전자파강도 시험만 수행하고 관련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면 신청인은 전자파강도 시험성적서를 일반 EMC 시험을 수행한 기관에 제출하여 최종 적합등록을 취득할 수 있음.
- 전자파강도 시험 수수료 : 394,000(원)

□ 승인 절차

○ 제도 설명

- 관련근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고시」에 의거 기 승인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추가 시험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배경) 현재는 각 수입자마다 개별적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 하고 있음.
- 신청 대상자 : 수입 또는 판매자

○ 동일기자재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서/대리인 지정서
- ② 기 승인 받은 업체로부터의 “동의서”
- ③ 기 승인품에 대한 적합인증서/등록 필증 사본
- ④ 제품외관사진 및 부품배치도

○ 승인 진행 수수료

- 적합인증 : 300,000원(등록/면허세 포함)
- 적합등록 : 200,000원(등록/면허세 포함)

[별첨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i>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th> </tr> <tr> <td style="width: 20%;">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Registrant</i></td> <td></td> </tr> <tr> <td>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td> <td></td> </tr> <tr> <td>기기번호/추가 기기번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td> <td></td> </tr> <tr> <td>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td> <td></td> </tr> <tr> <td>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td> <td></td> </tr> <tr> <td>등록번호 <i>Registration No.</i></td> <td></td> </tr> <tr> <td>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td> <td></td> </tr> <tr> <td>등록연월일 <i>Date of Registration</i></td> <td></td> </tr> <tr> <td>기타 <i>Others</i></td> <td></td> </tr> <tr> <td colspan="2">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전파연구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font-size: small;">*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 × 297mm, 목(상/하) 120g, 4/1</p> </td> </tr> </table>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i>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Registrant</i>		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		기기번호/추가 기기번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등록번호 <i>Registr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등록연월일 <i>Date of Registration</i>		기타 <i>Other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전파연구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font-size: small;">*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 × 297mm, 목(상/하) 120g, 4/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i>Self-Conformity Decla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th> </tr> <tr> <td style="width: 20%;">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Declarer</i></td> <td></td> </tr> <tr> <td>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td> <td></td> </tr> <tr> <td>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td> <td></td> </tr> <tr> <td>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td> <td></td> </tr> <tr> <td>기자재 관리번호 <i>Equipment Management Number</i></td> <td></td> </tr> <tr> <td>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td> <td></td> </tr> <tr> <td>기자재의 외관 사진 <i>Exterior Photos of Equipment</i></td> <td></td> </tr> <tr> <td>적합성평가 적용기준 <i>Conformity Assessment Application Standards</i></td> <td></td> </tr> <tr> <td>기타 변경사항 <i>Other Changes</i></td> <td></td> </tr> <tr> <td colspan="2">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합니다. The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self-confirmed under the Clause 4,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 × 297mm, 목(상/하) 120g, 4/1</p> </td> </tr> </table>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i>Self-Conformity Decla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Declarer</i>		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기자재 관리번호 <i>Equipment Management Number</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기자재의 외관 사진 <i>Exterior Photos of Equipment</i>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i>Conformity Assessment Application Standards</i>		기타 변경사항 <i>Other Change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합니다. The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self-confirmed under the Clause 4,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 × 297mm, 목(상/하) 120g, 4/1</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i>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Registrant</i>																																													
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																																													
기기번호/추가 기기번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등록번호 <i>Registr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등록연월일 <i>Date of Registration</i>																																													
기타 <i>Other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전파연구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font-size: small;">*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 × 297mm, 목(상/하) 120g, 4/1</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i>Self-Conformity Decla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Declarer</i>																																													
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기자재 관리번호 <i>Equipment Management Number</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기자재의 외관 사진 <i>Exterior Photos of Equipment</i>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i>Conformity Assessment Application Standards</i>																																													
기타 변경사항 <i>Other Change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함을 선언합니다. The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self-confirmed under the Clause 4,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y)</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210mm × 297mm, 목(상/하) 120g, 4/1</p>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